

장 학 규 정

구분	개정 및 시행일
직전 개정일	2021년 4월 5일
최근 개정일	2021년 10월 1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장학금의 지급계획, 그 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본교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본교의 장학금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과장 이상의 교직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학장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에서 학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금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 ②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 ③ 장학생 및 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④ 장학금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 3 장 장학금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본교 장학금은 재학생들의 학업을 증진하고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본교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① 재단이사장 장학금
- ② 성적우수 장학금
- ③ 교직원자녀 장학금
- ④ 로이가족 장학금
- ⑤ 국가유공 장학금
- ⑥ 학업장려 장학금
- ⑦ 신입생 장학금
- ⑧ 근로 장학금
- ⑨ 봉사 장학금
- ⑩ 공로 장학금
- ⑪ 특별 장학금
- ⑫ 기타 장학금
- ⑬ 외부장학금(개인, 단체, 법인 등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정하여 기탁한 장학금 포함)

제9조 (장학금의 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1학기, 2학기로 하며, 당해 학기 내로 한다. 다만, 외부장학금은

기탁자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장학생 선발

제10조 (장학생 선발요건)

- ① 본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 중 입학자격이 우수한 자
 2.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 나.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 및 그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 및 교직원과 그 2촌 이내의 친족(단, 계약직 직원과 조교, 비전임교원은 본인만 해당)
 - 다. 본교의 졸업생 및 산하기관의 수강생 중 본교에 입학 또는 시간제 등록하는 자라. 본교와 자매결연, 업무제휴를 맺은 기관, 단체, 학교 등의 구성원
 3. 해당학기 내 2촌 이내의 친족 중 2인 이상이 함께 재학하는 자
 4.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5. 본교와 산학협력 체결된 기관의 직원
 6.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거나 기여한자
 7.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8.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외부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발요건에 의하되, 그 선발요건이 없을 때에는 제 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 (장학생 선발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 발생 후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지급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 ① 편입학
- ② 징계해제
- ③ 근로성적 불량에의 평가를 받은 근로학생
- ④ 기타 제규정 위반자

제12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한다.

제 5 장 장학금 지급**제13조 (장학금 지급)**

-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한 규정 또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기 내에 지급한다. 다만, 외부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 ② 제8조⑧항 근로장학금은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장의 결재를 득한 근로학생에 한하여 장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가 발생한 익월에 근로급여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1. 장학금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이중지급 금지)

장학금의 수혜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이중수혜 대상자인 경우 유리한 것으로 택할 수 있다. (단, 제8조 ⑥, ⑧~⑬ 의 경우는 심의에 의해 지급한다.)

제15조 (장학금 지급정지 등)

- ① 선발된 장학생이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본교의 제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②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취소하거나 분납중인 등록금액에서 상계처리 한다.
- ③ 장학금을 지급받은 해당학기에 자퇴 등의 사유로 종강일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취소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한다.

제16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 할 수 있다.

제17조 (장학금 이월)

장학금은 등록 후 휴학하는 자에 한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학금 이월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장학금 지급방법)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된 장학생명단에 의거하여 사전 고지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2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5. 12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에 대한 장, 조, 항의 신설 및 조문 이동에 따라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선정한 장학생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2016. 7. 1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2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18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26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4. 6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19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4. 16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9. 26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5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4. 5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0.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장학금 시행세칙

종류	신청 자격	지급액
① 재단이사장 장학금	가. 과정, 등록인원 및 학년에 관계없이 재학생 중 전체 수석 1명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을 기준으로 등위를 결정. 단, 평점이 같을 때에는 저학년, 백분율평균,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과목의 순으로 정함.	지급액 (심의) (전체수석)
② 성적우수 장학금	가. 과정별 전체학년 수석 1명, 차석 1명에 차등지급 1) 과정별 수석 1명 2) 과정별 차석 1명 3) 전체수석이 있는 과정은 차석자에게만 지급 4) 필요시 유사한 과정을 계열별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음. 나. 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을 기준으로 등위를 결정함. 단, 평점이 같을 때에는 백분율평균,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과목의 순으로 정함. (2022-1학기부터 적용)	지급액 (심의) 지급액 (심의) 지급액 (심의) 지급액 (심의)
③ 교직원자녀 장학금	교직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면제
④ LOY가족 장학금	형제자매 2촌 이내가 동시에 재학할 경우 각각 지급	지급액 (심의)
⑤ 국가유공 장학금	국가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단, 국가유공자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자로 국고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교 장학금 지급불가). 1) 본인 2) 자녀	등록금 전액 수업료의 50%

종류	신청 자격	지급액
⑥ 학업장려 장학금	<p>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구열이 높고 품행이 바른 자.</p> <p>나. 재학생 중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이 높고 품행이 바른 학생 중 담임교수가 추천한 자. (2018-1학기부터 적용)</p> <p>다. 평점평균 2.5 미만인 자의 경우 장학위원회의 개인별 심의를 통해 정한다.</p> <p>라. 학업장려장학금은 2회, 또는 누적금액 500,000원까지 지급한다. (2019-2학기부터 적용)</p>	<p>지급액 (심의)</p> <p>지급액(심의)</p>
⑦ 신입생 장학금	<p>가. 대회우수장학금 : 전국 규모 대회, 작품전, 공모전 수상자(1,2위)로서 관련과정에 입학한 자</p> <p>나. 자격우수장학금 :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3개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과정에 입학한 자</p> <p>다. 어학우수장학금 : 영어 TOEIC(900점 이상), TOEFL(IBT 90점 이상), 중국어신HSK(6급), 일본어 JPT (660점 이상), JLPT(1급 이상) 취득자. 단,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외국국적 소유자로 해당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는 예외로 함.</p> <p>라. 선행장학금 :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국가, 지방자치 단체로 한정)으로부터 선행과 관련된 표창 또는 수상자.</p> <p>마. 신입생 특별장학금 : 특별한 사유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p> <p>바. 학업장려장학금 :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신입생</p> <p>사. 교직원자녀장학금 : 교직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신입생</p>	<p>지급액(심의)</p> <p>지급액 (심의)</p> <p>지급액 (심의)</p> <p>지급액 (심의)</p> <p>지급액(심의)</p> <p>지급액(심의)</p> <p>등록금 전액 면제</p>
⑧ 근로 장학금	<p>가. 본교의 특정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p>	<p>지급액(심의)</p>
⑨ 봉사 장학금	<p>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p>	<p>지급액 (심의)</p>

종류	신청 자격	지급액
⑩ 공로 장학금	가. 공신력 있는 국외 대회에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나. 국외 대회의 수준과 장학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대회에서 상금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수 있음. 라. 국내대회 수상자는 공로상장을 수여한다.	지급액 (심의)
⑪ 특별 장학금	가.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 내의 기관장 또는 이사 이상의 운영자가 추천한 자 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고, 교우관계가 돈독하며,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담임교수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 자(공적조서 제출) 다. 학교의 주요행사 또는 학생모집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담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라. 학업 성취도 향상 및 학업지원을 위해 담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급액 (심의) 지급액 (심의) 지급액 (심의) 지급액 (심의)
⑫ 기타 장학금	가.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업료 이상의 교과목 수강시 그 차액을 지원받은 자	지급액(심의)
⑬ 외부 장학금	가. 외부 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기탁자가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담임교수 추천을 받은 자 나. 외부 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 선발 시에는 장학금을 유치하거나 관련이 있는 과정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지급액 (심의)

○ 장학금 지급액은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